

5대거래소 대표 국회 면담… “한국만 규제, 경쟁력 떨어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업계 반발

이정문 당 디지털TF 위원장 찾아 대주주 지분 제한 ‘금융위안’ 쟁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란 업계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 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당 디지털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 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로 정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해 일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 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

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 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 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 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자제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망령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의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정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S인증, 공장보유 족쇄 풀다 설계·개발 기업도 취득 가능

취득주체 확대 OEM 상용화 기대
갱신 3년 → 4년 교육·심사 부담 ↓
불법 KS표시 즉각 조사 미달땐 취소

정부가 60여년간 ‘공장을 보유한 제조’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는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KS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된다. KS인증은 지난 1961년 도입 이후 한국 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디파운드·소량생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설계·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인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 기업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OEM 기반 기업들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인

증 취득 후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간접심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우회수출 증가 등으로 불법 KS제품 유입이 늘고 있다. 판단에 따라,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단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KS표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정부는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심사나 간접심사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인증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허브·너셀·타워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운영돼, 일부 부품만 변경돼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다.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방식을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 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 2026 - 32호

공 고

『석정1리 마을진입로(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며,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5.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사업 개요

공사명	사업시행자	보상내역	보상계획	비고
석정1리 마을진입로 (소로2-2호선) 확포장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일원	가. 토지 - 24필지(1,238m ²) 나. 지장물 - 6건	<input type="radio"/>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후 개별통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input type="radio"/> 현금 보상 <input type="radio"/> 보상시기 : 2026. 5. ~ (계획 변동가능)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방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양식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 번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설명 날인 (자택/휴대폰)	비고
				성명	실제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3.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6. 2. 5. ~ 2026. 2. 19. (14일간)

나. 장소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포승읍 행정복지센터 (☎ 031-8024-8422)

5. 토지조서 : 별도첨부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 참조